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10 선고 2023가단2736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

담당변호사 정영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12.

판 결 선 고 2024. 5. 10.

주 문

-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12. 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보전채권의 존부

갑 1, 5호증,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은 망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인정할 수 있다.

2. 다른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

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, 법원행정처와 강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 ① 피고와 C 사이에 2021. 12. 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②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한웅희

별지